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13호 2021. 7. 29.(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96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관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정비(안 제1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나. 법령에 있는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제1호)

-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추가(안 제2조제1호)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 추가 신설(안 제5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라. 용어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1)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2) 전화 : 054-650-6198, 팩스 : 054-650-6089
- 3) 전자우편(이메일) : gingertree@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3조 중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의 법령에 따라”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회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 따라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u>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 ----- ----- ----- ----- ----- 필요-----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 2. (생략) 3. ~ 6. (생략)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1. <u>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u> 2. · 2의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u>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의 법령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교육에</u>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u>군수는</u> ----- -----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

둘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담당팀장으로

-----.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 소집한다.

② <u>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u>회의는</u> ----- ----- ----- -----.
제8조 · 제9조 (생략)	(현행과 같음)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 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 따라 <u>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 ----- <u>군수</u>----- ----- ----- ----- . <u><단서 삭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 · 취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 · 취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u>한다.</u>	② ----- ----- ----- ----- ----- ----- . ----- ----- <u>할 수 있다.</u>
제12조 ~ 제15조 (생략)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 략)